

감사인 선임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1. 회사 개황**

1-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1-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1-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1-5 법인 구분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주식회사 / 기타 비상장주식회사 / 유한회사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1-5에서 “유 한회사인 경 우)	1-5-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여부	▼ 예 / 아니오				
	1-5-4 변경일자(1-5-3에서 “예”인 경 우)	yyyy - mm - dd				
1-6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1-6-1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여부	▼ 예 / 아니오					
1-7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자	▼ 감사위원회 / 감사 / 회사					
1-7-1 감사가 없는 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1-7-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1-8 당기 계약 감사인명						
1-8-1 감사계약 변경 여부	▼ 초도 / 계속 / 변경					
1-9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개월
1-10 감사계약 체결일자	yyyy - mm - dd					
1-11 과거 6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 여부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1-12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 예 / 아니오					

## 2. 제출할 문서 첨부

2-1 감사인선임보고 제출 공문	PDF 등 파일 첨부
2-2 감사계약서 사본	PDF 등 파일 첨부
2-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PDF 등 파일 첨부
2-4 감사인 교체사유	▼ 파일첨부 / 해당없음
2-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파일첨부 / 해당없음
2-6 감사위원회 의사록	▼ 파일첨부 / 해당없음
2-7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의사록	▼ 파일첨부 / 해당없음
2-8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 파일첨부 / 해당없음

### 기재상의 주의

- 1-5 감사계약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감사인 선임에 관한 보고를 생략한다.(예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그 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주식회사가 전기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 1-5-1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한다.(1-5-2, 1-5-3, 1-6, 1-6-1, 1-7-1, 1-7-2, 1-12 동일)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말한다.
-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그 외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 1-5-4 1-5-3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한다.
- 1-6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 1-6-1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7 감사위원회, 감사, 회사로 구분한다.
- 1-7-1 「상법」 제409조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정관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유한회사를 말한다.
- 1-9 감사대상 사업연도 입력시 해당 개월수를 입력하되 올림하여 입력(예 : 2개월 5일 → 3개월)
- 1-11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하여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한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작성 예시)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지정	지정	지정	자유선임	자유선임	해당없음

- 1-12 감사인이 보고서를 대리제출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 2-1 회사가 이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감사인이 보고서를 대리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위임장 사본도 함께 제출한다.
- 2-2 외부감사계약서상 반드시 법인직인을 날인하고, 계약일(년,월,일)을 기재한다.
- 2-3 등기기록 중 전부사항에 대해 제출한다.
- 2-4 감사인을 전기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으로 변경시 반드시 교체사유를 제출한다.
- 2-6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정에 관한 의사록을 제출한다.
- 2-7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 선임 승인에 관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을 제출한다. 그 밖의 회사 중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승인에 관한 사원총회 의사록을 제출한다.

2-8 1-12에서 “예”인 경우만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사본을 첨부한다.